

특수교육과 교육의 지속

Fact Sheet

CIDA Town Hall 2020

키워드 : 장애 학생, 언어 장벽이있는 저소득 가정, 학생의 미래 준비, 장애 학생을위한 원격 학습, 학습을위한 최소 제한 환경을 포함한 동등한 학습 접근성



In This Fact Sheet

**01. 코로나기간중
원격학습 및
특수교육에 대한
연방정부의 정책**

02. 뉴욕주의 정책

03. 권리옹호 팩트

CIDA Vision

우리는 모든 장애인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 주도적 (self-determined) 생활을 하고, 지역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.

법률 및 정책

코로나기간중 원격학습 및 특수교육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

- **평가 Assessment**
 - COVID-19 유행병으로 인한 제한은 연방장애인 교육법 (IDEA) 파트 C 45 일 일정 요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"예외적인 가족 상황"(사례별로)으로 간주 될 수 있습니다. .
 - 아동과 아동의 가족이 필요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조기 개입 서비스는 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.
 - 대유행 기간 동안 직접 평가 및 평가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, 의료 기록을 사용하여 평가를 수행 할 수 있으며 평가가 원격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.
 - 출처 : [2020 년 7 월 6 일 발행 된 미국 교육부 특수 교육 프로그램 메모](#)
- **절차 Procedure**
 - 공공 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한 부모의 서면 동의로서, 적절한 보호 장치와 함께, 부모의 전자 / 디지털 서명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.
 - 자녀의 초기 평가, 재평가 또는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의 초기 제공
 - 자녀의 교육 기록에서 개인 식별 정보 (PII) 공개
 - 공공 기관은 학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, 절차적 보호 조치 통지 및 / 또는 전염병 기간 동안 이메일을 통해 교육 기록에 대한 접근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.
 - 출처 : [연방교육부 특수 교육 프로그램 메모 2020 년 6 월 30 일 발행](#)
- **코로나 대유행기간중 교육기금의 사용**
 - 주 교육 기관 (SEA) 및 지역 교육기관 (LEA)은 IDEA 파트 B 프로그램 특수교육기금을, [연방교육부 특수 교육 프로그램국 \(OSEP\)](#)이 해당자금의 사용이 특수교육 프로그램 (Part B)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조건으로 허용한다면, 특수교육기금을 원격 학습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비 및 기타 자산에 사용할 수 있다.
 - 출처 : [연방교육부 특수 교육 프로그램 메모 2020 년 6 월 25 일 발행](#)

특수교육과 교육의 지속

Cont. p2

Special Thanks to...

Senator John C. Liu (Co-host)

Chairperson, New York City
Education Committee

SANYS

[Self Advocacy Association of NYC](#)

AFC

[Advocates for Children of New York](#)

INCLUDEnyc

CACF

[Coalition for Asian American
Children and Families](#)

KACF

[Korean American Community
Foundation](#)

CCHC

[Chinese Christian Herald Crusades](#)

**New York State
Education Department
Special Education
Quality Assurance
Regional Offices**

[New York City Regional Office](#)

(718) 722-4544

[Long Island Regional Office](#)

(631) 952-3352

[Eastern Regional Office](#)

(518) 486-6366

[Hudson Valley Regional Office](#)

(518) 473-1185

[Central Regional Office](#)

(315) 428-4556

[Western Regional Office](#)

(585) 344-2002

뉴욕주 정책

특수교육 Special Education

- 학군들은 학교폐쇄기간 동안 학부모 및 보호자와 소통하기 위한 절차를 개발해야하며 학교 재개방 후 후속 커뮤니케이션을 책임져야 합니다.
- 학교는 장애가있는 각 학생이 원격학습계획 및 교육전화통화를 포함하여 학생의 개별 교육 프로그램 (IEP)에서 확인한 특수 교육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.
- 출처 : [2020 년 3 월 발행 된 뉴욕주 교육부 메모](#)

Continuity of Learning for English Language Learners

- 뉴욕주 교육부 이중언어교육 및 세계 언어담당실은 모든 뉴욕주 학생들이 최적의 언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.
- 출처 : [영어 학습자를위한 학습 지속성 \(뉴욕 주 교육부, 2020 년 3 월\)](#)

이외 관련문서 및 자료

- [뉴욕주 교육부 COVID-19 웹사이트](#)

권리옹호 팩트

연방법관련 책임요건 Federal Accountability

- 연방교육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2020 년 주정부 평가책임을 면제했습니다.
- 이러한 면제는 주 교육 기관들이 2019-2020 학년도의 연방초중등 교육법 (Every Student Succeeds Act)의 주정부의 평가 및 책임 요건을 우회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.
 - 주 전체 평가 중단 및 취소 가능성.

학습시간 Instructional Time

- 학교가 휴교하는 동안 일반 교육이 제공된다면, 학군은 장애 학생도 일반 교육학생과 동일한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.
- 많은 학생들이 원격 학습을 위한 기기나 기술 접근이 부족합니다.
- 미국 학생의 17 %가 집에 컴퓨터가없고 18 %의 학생이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(AP 통신의 통계 데이터)

학생과 학부모의 권리 Rights of Students and Parents

- 연방기금이 장애 학생을 차별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권리옹호를 하십시오.
- 정보는 부모가 이해 할 수 있고, 장애가 있는 부모도 접근 할 수있는 언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등 특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.
- 장애 학생은 비장애 학생과 함께 일반 교과에 원격으로 참여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술 또는 특수 장치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.